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3. 7.(목) / 총 1매(본문1)
담당 부서	건설산업과	담당자	•과장 박정수, 서기관 박동주, 주무관 임대한 •☎ (044) 201-3539, 3546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불법골재가 채취·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

- 국토교통부에서는 불법골재가 생산·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.
- 우선 불법골재 채취를 근절하기 위해 무등록·무허가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.
 - * 무등록·허위등록·무허가·미신고 등 불법골재 채취업자에 대한 벌칙 개정('18.6 : (기존)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→ (강화)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 - 또한 「골재채취법」 제32조의2에 '골재사용자의 의무'를 신설('17.12) 하여 건설업자·레미콘 제조업자 등과 같은 골재사용자에게 적법하고 골재품질기준을 충족하는 골재만을 사용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.
-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골재품질 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양질의 적법한 골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채널A, 3.6.) >

- ◆ 무허가 땅 파내 '골재 장사'...처벌은 솜방망이
-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골재채취 성행
 - 이익에 비해 벌금이나 처벌이 약해 실질적인 대책 필요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건설산업과 박동주 서기관(☎ 044-201-353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